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질병 산재가 여전히 넘어야 하는 것들

김지나 회원, 노무사

한 사람의 가장 서러운 곳으로 가서
농담 한 송이 따서 가져오고 싶다
그 아린 한 송이처럼 비리다가
끝끝내 서럽고 싶다
나비처럼 날아가다가 사라져도 좋을 만큼
살고 싶다
_『농담 한 송이』, 허수경

부재는 가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실감나기 때문에 가혹하다. 늘 건네던, 다녀왔느냐고 말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밥은 먹었느냐는 전화 한 통을 하려고 휴대폰을 드는 이런 순간은 마음의 대비가 없다. 남편이 쓰러진 날은 평소와 같았다.

남편은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고장 접수가 들어오면 출동하여 수리하는 일을 20년 넘게 하였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4명이 일하고, 고장이 접수되면 출동하여 수리하는 일은 주로 사장과 남편 둘이 하였다. 남편의 업무를 대신해 줄 직원은 사실상 없었다. 고장 접수는 밤, 새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은 오전에 출근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 이어서 일했다. 따로 대기 장소가 있었지만, 설핏 잠이 들더라도 고장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출동했다. 사장은 남편이 ‘출동 알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1년 중 거의 유일하게 가족과 보낸 설 명절이 지나고 3주 만에 남편은 심장 질병으로 사망했다.

산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지인을 통해 전화를 한 사람은 아내의 오빠, 재해자의 처남이었다.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는데 일을 많이 했다고 했다. 재해자의 아내와 아내의 오빠를 처음 만난 날, 면담을 시작하자마자 아내가 말했다. ‘산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피해가 된다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본인의 일에 자부심이 컸다. 일을 좋아했고, 잘한다는 말을 들었고, 직장뿐 아니라 주변 정비소로부터 평판도 좋아 늘 남편을 찾았다. 산재를 신청해서 죽은 남편이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욕을 듣는다면 산재 신청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내에게는 그것이 남편의 명예였다.

최대한 산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느 경우에 산재가 되는지, 산재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법적으로 보상하게 되었는지, 산재 신청이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에 없던 오지랖을 부렸다. ‘제가 사장님에게 설명할게요.’ 청구인은 그제야 산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사업주의 오해와 조력 의무

다행히 사업주는 질병 산재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지, 산재 조사에서 확인되는 업무시간에 대해서 곧바로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든지,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설명해 주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게 조력 의무¹⁾가 있지만, 사실 이 사건과 같이 조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력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다.

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 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들은 산재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와 억측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고 있다. 재해자의 업무시간과 업무를 축소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자료가 없다고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로성 질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 시간과 업무시간의 차이를 알지 못해 잘못된 업무시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 업무 가중 요인을 명확히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조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공단 담당자들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여전히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야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받아 본 재해자가 ‘그동안 사고가 나도, 아파도 참고 일해 왔던 것이 후회된다’라고 하는 일은 셀 수 없다.

재해조사 나팔게요

사업주는 재해자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진술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컴퓨터를 켜서 출동내역이나, 입력 시스템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족했던 부분은 현장 조사로 보완됐다. 재해조사는 현장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특히 뇌심혈관계 질병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서에 따라 ‘문답서’ 등 서면 및 유선전화 등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 잘못된 증거와 사업주 제출 의견만을 가지고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해자가 알 수 없고, 이 재해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판정위원회 심의안으로 잘못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더욱 많다.

다행히 이 사건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가겠다고 했고, 대리인으로서 동행하였다. 담당자는 영세 사업장 특성상 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던 주장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였고 필요한 것은 사진을 찍었다. 다만, 대기시간에 대하여 과소 산정하였는데, 지침에도 반하는 명백히 잘못된 조사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산재로 인정되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다.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 질병도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 산재가 접수된 이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 조력 의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권리로써 이어질 수 있는 과정에 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아내는 산재가 인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통화에서 ‘아직 남편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명절에 아내는 남편의 명예에 대해서 떠올릴지도 모른다. 

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